

한국민간조사제도 도입전망과 과제

박 준 석(용인대학교)

정 연 민(용인대학교 대학원)

이 영 석(경북전문대)

The tasks and prospect of introducing the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system in korea

Park, Jun-seok, Jeong, Youn-min, Lee, Young-seok

Abstract

With rapid changes taking place in every field, the expansion and specialization of various social service activities are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modern society.

However, the increase of crimes and inefficiency of public police service to cope with this situation have caused discontent and distrust on the service among the public, making people more inclined to solve safety-related problems by themselves.

Private Security Service(PSS) and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PIS) were introduced to satisfy these needs. In the area of PIS, Public Investigation Service System(PISS) has been established for a quite long time in foreign countries. However in Korea, PIS is being provided by unregulated service providers such as errand service center due to the lack of legal system, causing many problems related with illegal practices by the service providers.

This paper is the result of the research on how to adopt a relevant PISS in Korea and develop it in the future. This kind of research is much needed to curb the rising illegal practices of the errand service centers, complement the insufficient operation of public police service, and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our country by taking more efficient actions in the changing public security environment.

Based on the research, this paper also examines positively the possibility of introduction of PIS in Korea. This paper also recommends a prompt enactment of PIS regulation and improvement on the legal environment for such introduction of the relevant and suitable PISS in Korea.

[Key words :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private security service, private security]

I. 서론

21세기 사회는 모든 영역과 기능에서 빠른 변화가 진행되면서 시민의 정치·경제·사회적 활동영역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전문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 발생에 대한 정부의 해결 기능의 한계로 인해 국민들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급증하고 공권력에 대한 불신으로 개인의 안전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을 띄고 있다. 이처럼 민간경비 산업의 영역확대와 시큐리티 환경의 변화는 국민으로 하여금 기존의 민간경비 서비스의 수요증가 뿐 아니라 새로운 분야의 서비스를 기대 하게 되었다.

민간조사업은 개인의 인권보호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치안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민간조사제도가 활용되었지만 이와 같은 업무를 한국에서는 심부름센터와 같은 서비스업에서 수행함으로써 관련 법률의 미비로 인한 불법행위가 만행되고 있다. 현재 심부름센터는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및 자격증 등을 조건으로 그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어 무분별한 난립과 업체 간의 과다경쟁으로 불법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런 업체들 중 현재 세무서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경우가 500여개이고, 비공식적으로는 3,000여개 이상이며, 서울에만도 1,000여개가 성업 중이라고 한다(전양대, 2006 : 2).

현재 우리나라 현행법의 모순과 민간조사제도의 미비로 그 업무가 음성적, 불법적으로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과거의 부정적·불법적인 민간조사의 이미지 불식,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민간조사업무 및 활동의 불합리한 역차별 구조해결, 이미 상당한 규모로 형성된 세계민간조사시장의 경쟁력 제고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사회 전체에 주는 효과와 영향을 조망해 볼 때 민간영역의 치안서비스 활동이라 할 수 있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강영숙, 2006 : 4).

따라서 법률에 의한 국가의 관리와 감독을 통해 일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여 전문적·합법적인 민간조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의 확대 방지, 공권력의 한계 보완, 치안환경의 변화에 대응, 변화하는 국제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의 향상은 물론 실질적인 복지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사회적 상황과 문제점을 외국의 민간조사제도와 비교하여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민간조사제도를 도입 정착할 수 있도록 입법화와 관련 법률의 제정비를 통한 민간조사업의 활용 및 도입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II. 민간경비산업의 환경변화와 민간조사업의 필요성

1. 민간경비산업의 환경변화

1) 미국의 민간경비산업

미국은 상업시설, 주거시설 그리고 지역사회가 경찰보다는 민간경비원을 채용하면서 민간경비업이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 경찰의 민영화의 이러한 추세는 통계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1970년 미국에서 민간경비원 1명: 경찰 1.4명 이었으나 2005년에는 민간경비원과 경찰의 비율은 3:1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4:1로 나타나고 있어서 민간경비원이 수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http://www.ncpa.org>). 2005년에는 정규경찰관이 800,000명에 민간경비원이 2,500,000명, 경찰기관은 19,000개인 데 비하여 민간경비업체는 14만개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5년을 기준으로 미국은 민간경비에 900억달러를 부담하고 있으며 경찰에 400억달러를 부담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이 경찰보다는 민간경비원을 더 많이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http://www.ncpa.org/pi/crime/pdcrm/pdcrm63a.html>).

또한 미국은 14만개 이상의 민간경비회사가 있고 분야별로 전문경비협회를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경비산업협회(ASIS), 국제병원경비협회(IAMS), 경비장비산업협회(SEIA), 전국학교경비협회(NASSD)등이 활동하고 있다(장석현, 2007 : 7~9).

2) 한국의 민간경비산업

민간경비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 가운데에서 범죄의 증가와 범죄피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전환, 민영화, 경제 성장과 소득수준의 향상 등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은 1인당 국민소득 1만 불을 넘으면서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여 한 때는 '황금알을 낳는 업종'으로 각광을 받아왔다. 우리나라의 민간시큐리티 시장 규모는 2002년 2조원, 2004년 2조 5,138억원, 2006년 약 3조원, 2010년에는 약 10조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박준석, 2006 : 92).

또한, 민간조사업 시장규모는 3조원 대에 이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사기는 2조~2조 4천억원에 달하는데 적발은 2006년 기준으로 3만 4,567건에 2490억 원에 그쳐 약 10%에 불과했다. 현행 보험조사관들은 목적자 등 제 3자 조사를 할 수 없지만, 공인 민간조사원이 활동을 시작하면 적발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고, 카드회사의 미납자 소개 확인도 민간조사업 시장으로 들어온다. 외국의 민간조사업체가 한국에 이미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뉴스메이커 719호, 2007. 4.10).

2. 민간조사의 필요성

의뢰인의 의뢰를 받아 활동하는 유사한 용역업종이 전국에 약 3천여 개의 심부름센터·홍신소·시설탐정소 등의 명칭으로 국세청에서 영업에 대한 과세(課稅)를 위한 소득표준을 분류코드에 따라 '탐정업'이라고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등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불법적인 활동들을 함으로써 단속의 대상이 되어 활동이 힘들어지자 단속이 어려운 온라인 사이트로 옮겨와 편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손상철, 2005 : 85~88).

미국 대부분의 주와 프랑스, 스페인, 캐나다, 독일, 벨기에, 호주, 싱가포르 등 상당수의 국가들이 엄격한 자격시험과 훈련을 거쳐 취득한 면허나 자격을 부여하는 공인 민간조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면, 영국과 일본의 경우처럼 국가 자격증이 아닌 민간 자격증으로도 누구나 민간조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다가 여러 가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지자 최근 민간조사 관련법을 제정하여 제도화하는 국가도 있다(강영숙, 2006 : 55).

민간조사제도는 공권력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장점과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을 아울러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도입이 시급하다. 특히 심부름센터 등의 폐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체계적인 민간조사요구에 대한 국민수요를 충족시켜줌과 아울러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나영민·김원중, 2006 : 12).

국제적인 측면은 첫째, OECD는 가입국가사이의 관심분야나 현안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협의를 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조직으로서 가입국은 법적구속력을 받지 않으면

서 회원국 간의 합의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외국인민간조사원의 국내활동과 내국인의 외국기업을 위한 국내활동은 단속할 법적 근거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할 것이다. 둘째, 최근 한·미FTA가 체결되고 앞으로 한·중FTA, 한·EUFTA, 한·일FTA가 체결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일련의 FTA가 체결되면, 자국의 이익을 위한 국가간 기업간 정보 전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고, 특히 지적재산권침해나 상표권 침해 등 경제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각국에서 민간조사업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2006년 6월 2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탐정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이 전원일치로 가결되었고(이기호·박병식, 2007 : 79) 영국의 민간경비청은 2007년 하반기에 민간조사원 면허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노호래, 2007 : 27).

이와 같이 국내, 국제적으로 민간조사의 필요성과 실용화된 사실을 바탕으로 민간조사의 제도화를 정착하여 민간조사업의 합법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불법적인 활동은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민간경비와 민간조사의 관계

민간조사 분야의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주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민간조사원의 면허를 취득하면 민간경호경비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민간경비 분야의 민간조사 분야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의뢰인의 민·형사상의 법적인 절차상에서 유리할 수 있는 증거 및 증인에 대한 조사,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조사, 행방불명된 가족에 대한 조사, 개인 및 기업의 신용도에 관한 조사, 기타 의뢰인의 의뢰에 의한 합법적인 조사업무 이외에도 경호경비업무에 있어서의 위해가능성 및 손실예방 그리고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업무 등에 대한 중요성과 영역은 별개의 분야가 아닌 상호보완성이 큰 동종(同種)의 분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손상철, 2005 : 29~30).

민간경비와 민간조사는 역사를 함께 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국가에서 민간조사활동이 민간경비 산업의 한 영역으로 자리를 잡은 지 오래 되었다.¹⁾ 이에 민간경비분야와 민간조사 분야는 공통된 이론적 특성과 역사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1) 1850년 앨런 핑커튼에 의하여 설립된 최초의 사설탐정사무소인 Pinkerton's National Detection Agency에서 발전된 'Pinkerton's Inc.'는 탐정, 경호, 경비업 등 전반적인 민간경비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며, 현재 세계 최대의 업체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민간경비와 민간조사 분야의 역사와 관계를 잘 증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민간조사의 분류 와 외국의 민간조사제도

1. 민간조사의 분류

민간조사를 일반적으로 구분하면 국가 혹은 국가 승인기관이 인정한 공인자격의 취득여부에 따라 공인민간조원과 일반민간조사원으로 구분할 수 있고, 또한 법률, 제정, 기업, 보험, 경비 등의 전문영역분야에 따라 각각의 전문민간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강영숙 2006 : 14).

1) 자격 취득의 기준에 의한 구분

공인민간조사원은 민간조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받은 단체로부터 일정한 자격시험과 교육을 거쳐 취득한 자로서, 국가에서 규정한 모든 사건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민간조사원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 공인 민간조사원은 일반민간조사원을 고용인으로 두고 민간조사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의뢰인에게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고, 제한적이지만 정부기관의 기록 열람 및 수사기관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수사 정보자료 회사들로부터 각종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민간조사원들이 법정에서 증언 시 전문인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는다.

반면에 일반민간조사원은 국가기관에서 규정한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채, 면허를 가진 공인민간조사회사에 소속하여 일을 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일을 하거나 계약 혹은 상담을 할 수 없는 등 업무범위와 권한에도 공인 민간조사원과 큰 차이가 있다. 미국에선 공인민간조사가 아닌 일반민간조사의 자격증은 면허라고 부르지 않고 취업을 할 수 있는 취업허가증(Employee Registration Card, Investigator Permit)이다(강효훈, 2000 : 240~241).

2) 전문분야별 구분

(1) 기업 민간조사원(Corporate Investigator)

대기업 등에서 의뢰회사의 내·외부 문제에 대한 조사와 범죄의 음모를 밝혀내거나 회사 재산에 대한 절도, 상품선적 등과 관련하여 사기·비용지출 내역의 허위사실 등을 조사하여 이에 연루된 직원들을 찾아내는 일을 한다.

(2) 재정 민간조사원(Financial Investigator)

금전과 관련된 횡령·사기사건 등을 전문으로 한다. 전문 회계 지식을 이용하여 회사의 재무 상태나 횡령자금의 소재 파악, 추적을 할 수 있으며 주로 투자은행이나 변

호사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자금거래에 연루되어 있는 회사나 개인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 보유한다.

(3) 법률 민간조사원(Legal Investigator)

소송사건을 전문으로 하며 변호사들이 소송을 위해 필요로 하는 증거나 자료를 수집하거나 피고의 변호를 돕기 위해 증인을 확보하고 경찰과 면담을 하며 증거를 수집, 검토하거나 사진촬영을 하면서 스스로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도 한다.

(4) 보험 민간조사원(Insurance Investigator)

보험금을 노리고 자해행위, 보험사기 등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뒷조사나 사고 재해의 적절한 피해보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전문으로 한다.

(5) 경비 민간조사원(Store Investigator)

대규모 쇼핑몰에 소속되어 절도나 소매치기 등을 검거 및 사기행위, 내부 직원의 부정행위 등을 적발하고, 직원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 등의 근무태도를 감시하는 일을 주로 한다.

(6) 기타 전문민간조사원

이외에도 자신의 전문분야에 따라 현상수배범 소재파악전문, 뺑소니 차량추적, 해외 도피사범 소재파악 전문 등 여러 형태의 민간조사가 있다(이동영, 2001 : 22~23).

(7) 사이버 민간조사원(Cyber Investigator)

주로 On- Line상에서 이루어지는 사기, 불법행위 등의 범죄피해를 입은 의뢰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주로 사이버 공간에서 수행하게 되는 민간조사를 말한다(김원태, 2006 : 41).

2. 외국의 민간조사제도

1) 미 국

미국은 전 세계에서 민간조사제도가 가장 발달되어 있고 거의 모든 사건에 민간조사원이 관여될 정도로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나라이다. 미국의 민간조사, 경호, 경비업도 변호사나 의사 등과 같은 전문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회사에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운영자에게 면허를 부여한다.

민간조사업은 향후 10년에서 15년 동안은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조사원에 대한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간경비 산업이 인수·합병을 통한 거대화과 분야의 무한확대를 통한 미세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흐름에 발맞추어 민간조사 회사들도 점차 대규모화해 가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이동영, 1999 : 88).

(1) 민간조사제도의 운용 실태

현재 미국에는 6만여명의 공인민간조사원들이 활동 중인데, 전문적인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와 동등하게 민간조사업을 전문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에서는 자체 주 정부의 해당 면허를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정액의 책임보험에도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Alabama, Alaska, Colorado, Idaho, Mississippi, Missouri, South Dakota와 같은 주에서는 주 정부의 면허가 전혀 필요 없기도 하고, 또 몇몇 주에서는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민간조사면허제가 없는 주라고 해서 민간조사제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며 해당 주가 대도시에 있는지, 농촌지역인지 기반산업이 무엇인지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 여부에 따른 차이라 볼 수 있다. 미국 민간조사협회에서는 가급적 자격요건을 법적으로 보다 더 까다롭게 설정하고, 상당기간 동안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하며, 민간조사원의 윤리강령도 제정하여 이를 어기는 자들에 대한 자체적인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민간조사원이나 민간조사업의 인가요건들을 매우 엄격하고 다양한 법률규정을 요구하고 있다 (<http://www.bls.gov/home.htm>).

(2) 민간조사의 업무범위

미국에서의 사립탐정은 자유업이지만, 사립탐정도 공공의 복지에 봉사하고 또한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최소한의 공적인 의무가 주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민간조사원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성문의 규정을 통해 정해 놓고 있는데 Pennsylvania, New Jersey, California, Florida State를 비롯한 대부분 주에서는 비슷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Pennsylvania State에서 규정한 민간조사의 업무범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3-1>과 같다(<http://www.pali.org/papdact.htm>).

<표3-1> Pennsylvania State의 민간조사업무범위

①	미국 연방이나 주(State) 혹은 미국에 속한 영토에 대해 발생되거나 위협이 되는 범죄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조사
②	특정 개인이나 단체, 협회, 조직, 사회분야, 동료, 범인 등의 확인 습관, 제휴, 관계, 거래, 평판, 특성 등에 대한 조사
③	증인 및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한 신뢰성 조사
④	실종자의 소재 파악
⑤	분실 및 도난재산의 회복 및 소재파악
⑥	화재, 명예훼손, 비방, 손해, 사고, 신체장애, 부동산 혹은 동산에 대한 책임의 원인과 근거 등의 파악
⑦	특정인, 특정조직, 사회, 협회, 법인, 직원 등과 관련된 사실 확인
⑧	파업으로 인해 일을 그만둔 사람이나 그 당시 고용주에 대한 사실 관계 조사
⑨	종업원, 관리인, 계약자, 하도급자들의 행위, 정직, 효율, 충성 또는 활동에 관한 사실 조사
⑩	형사재판, 민사재판 시 조사위원회, 판정위원회, 중재위원회의 판정 및 조정 전에 사용될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일

* 자료 강영숙, “한국의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2006, p.69.

미국은 각 주마다 서로 다른 법규와 제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주 경계를 넘어서 민간조사 업무를 할 경우, 주 경찰과 같은 관할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주와 조약을 맺어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상호조약으로 인해 불필요한 관료주의적 간섭기능을 제거할 수 있어서 민간조사업의 발전은 물론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되고, 민간조사의 수사비용까지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강영숙, 2006 : 68~70).

2) 영국

영국은 민간경비출현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다. 민간경비의 출현이 영국에서 시작되어 유럽과 미국으로 확산되면서 민간경비의 본격적인 발달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영국에서는 사설 경찰활동이 공적인 경찰활동보다 먼저 존재하였으며, 민간경비는 공경찰의 역사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박병식, 1996 : 19). 민간조사원들의 활동은 경찰력의 공백을 메우며 경찰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그동안 민간조사원이 되기 위한 특별한 규제나 규정이 없었으므로 조사업 무나 법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전직 경찰이나 군인들이 민간조사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조사의 기법이나 지식들을 교육하는 민간조사학교들이 많으므로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국가의 면허국에서 발급하는 국가직업인증(NVQ ;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을 취득할 수 있었다.

선진 경찰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영국에서도 수많은 민간조사원들이 경찰력의 공백을 메우며 경찰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1) 직업교육 및 자격증제도 현황

영국의 직업교육은 대개 직업교육칼리지(Further Education College)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대부분 정부(Further Education Council, Scottish Office Education and Industry Department, the Department for Education in North Ireland)의 보조를 받는 공립으로 이곳에서 직업교육 코스를 공부하게 되면 전문기관에서 수여하는 자격증을 획득하게 된다. 이 자격증들은 직업을 구하는데 아주 유용할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NVQ(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를 민간조사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다. NVQ는 개인의 업무능력 향상도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업무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에 근거해 평가되는데, 이는 자신의 일터에서 이미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외부 감독관에 의해 실시되거나 직장 상사의 감독이나 개인의 실무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손상철, 2005 : 115~117).

영국에서는 현재 민간조사원이 되는데 특별한 규제나 규정은 없었으나, 2001년 5월에 제정된 경비업법의 면허제도에 의하여 민간조사면허제도가 곧 시행될 계획이다. 민간조사원 면허제도에 대한 몇 가지 초안을 제시한 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에서 검토하여 결과를 2008년 전반기에 발표할 계획으로 만약 시행된다면 2008년 후반기가 될 것이다(<http://www.homeoffice.gov.uk>).

(2) 민간조사의 업무 내용

영국의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Act 2001' 에 규정된 탐정의 업무내용은 첫째, 특정인물의 활동이나 소재에 대한 정보수집, 둘째, 멸실된 재산 상황 또는 그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감시, 조회 또는 조사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Act 2001', 제4조).

3) 일 본

일본은 그동안 민간조사업에 대해서 국가차원의 규제 및 관리 등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와 같은 입장이었지만 그러나 서비스업으로 관할관청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민간조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폐해와 부작용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민간조사업 규제를 위한 입법화를 오랫동안 추진해 왔고, 2006년 6월 8일에는 민간조사업법인 '探偵業の業務の適正化に關する法律案'을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킴에 따라 국가가 관리·규제할 수 있는 공인민간조사제도의 시행을 결정하게 되었다(강영숙, 2006 : 76).

(1) 민간조사업의 현황

민간조사제도에 대해 국가가 특별히 면허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고, 관할 관청에 서비사업으로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단순한 행정법상의 규제대상에 불과했다. 따라서 수많은 민간조사관련 업체와 민간조사아카데미들이 난립하였는데, 한 예로 1954년에는 탐정경비사양성소와 같은 민간단체에서 민간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탐정학사'라는 민간자격을 부여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일본탐정협회가 국가에 의장등록을 하고 독자적으로 발행한 학교의 졸업증명서와 비슷한 자격증으로 다른 일반서비스업과 마찬가지로 민간조사업 개업에 따른 신고나 가맹의무는 없는 것이었다(김태환·강영숙, 2004 : 170~175).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민간조사원이 되는 일이 어렵지 않았고, 생활 속의 다양한 의뢰와 민간조사 수요의 증가, 또한 일본의 장기간 경기침체와 한건의 의뢰만 있어도 수입이 괜찮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자기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퇴근 시간 이후나 주말 등을 이용해 부업으로 민간조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매우 많다.

또한 국가에서 오래 동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방치상태는 탐정사, 홍신소, 조사회사 등의 다양한 명칭 사용과 함께 전화번호부에서도 같은 민간조사업체가 여러 개의 상호로 영업하는 등 업종의 난립현상을 보였는데 민간조사업체의 숫자는 전국에 5,000여 곳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힘든 상황이다.

일본 민간조사업계의 불법행위가 계속 성행하여 심각한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이들을 규제할 법 제정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대두되었던 것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2006년 6월8일 '민간조사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민간조사업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한 신고제 실시·업무운영의 적정화·개인의 권리 이익의 보호에 관한 것을 목적으로, 필요 규제와 불법행위에 대한 강제성이 나타나게 되었다(강영숙, 2006 : 80~81).

(2) 민간조사의 범위

일본의 민간조사도 사회적 발전과 함께 전문분야에 따라 법률민간조사원, 경제민간조사원, 기업민간조사원, 보험민간조사원, 의료민간조사원, 경비민간조사원 등의 전문분야로 나눌 수 있지만, 일본에서 민간조사의 업무는 주로 개인의 소행조사·불륜조

사 등의 행동조사와 기업들로부터의 조사 의뢰가 대부분으로서 개인 및 소규모 회사와 대규모 회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이동영, 1999 : 122~123).

Ⅳ. 한국의 실정 및 도입방안

1. 민간조사업의 도입을 위한 노력

현재 국내의 경우 민간조사업에 관한 제도가 없어 허가도 단속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1997년 이후 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이 개방된 것을 계기로 외국관련업체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으며 앞서 설명한 대로 외국의 민간조사업체들이 탐정소라는 명칭만 사용하지 않을 뿐 컨설팅이란 명목으로 실제 민간조사 업무를 하고 있는 데에는 한국의 실정법이 실무에 있어 민간조사업을 제한하기에는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며, 현실적으로 컨설팅이란 명목으로 내세우고 영업을 하는 데는 그 한계를 분명하게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국내의 민간조사시장의 잠식과 국민·기업의 재산 및 기밀의 유출을 외국의 민간조사업체로부터 보호하며, 국가수사기관의 한정된 수사 인력과 장비로 인한 부족한 부분을 민간조사력으로 충족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민간단체들이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을 맞이하면서 '한국민간특수행정학회'²⁾가 교육인적자원부 사단법인 '한국민간자격협회' 자격인증 기관으로 인증되어 자격기본법에 의한 탐정관련 민간자격인 '사설탐경사(PIA)'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민간조사교육원'에서는 '민간조사원(PI)'을 양성하는 사설교육기관이 설립되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민간 차원의 사설교육기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민간조사 관련 민간단체 및 사설교육기관들을 통하여 교육을 수료하거나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은 사무실을 개업하거나 보험회사 및 변호사 사무실 등에 진출하여 보험사기 조사·법정사건 조사·교통사고 조사 등 실질적인 민간조사업무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험범죄조사 전문법인도 문을 열었다. 하지만 국내의 여건에서는 독자적인 민간조사사무실을 운영한다는 것은 민간조사 관련제도가 없는 관계로 대부분의 조사업무가 실정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한국민간특수행정학회'는 교육인적자원부산하 '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되어 학술대회 등의 개최 대회예산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며, 민간특수행정분야의 학문적 토대의정립에 중점을 두고 활동함.

현실적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들 단체는 재외한인탐정, 외국의 민간조사 기관 및 교육기관, 사립탐정들과의 교류 및 교육연수를 통하여 선진국의 민간조사기법 및 시스템을 국내의 실정에 맞도록 하는 노력들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으며, 민간특수행정으로서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학술대회 및 세미나 등의 개최를 국가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기도 하며 실시하고 있다(손상철, 2005 : 70~72).

선진국의 모든 국가들이 어떤 형태로든 자국의 실정에 맞는 민간조사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공인 민간조사제도를 만들어 국가에서 일정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자격증을 부여하여 민간조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인권침해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공권력으로는 해결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수익자부담원리에 의하여 수요자들이 자유롭게 민간조사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는 상태이다(이동영, 1999 : 57).

국내의 경우도 공인탐정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치인·학자·법조인·일반인들의 모임이 있으며, 민간조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및 업체들이 있으나, 관계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활동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국내에서 공인탐정제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민간조사업업을 외국시장에 개방함에 따라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막대한 의뢰비용을 지급하며, 외국의 민간조사 기업에게 국민과 기업의 비밀과 재산·명예를 맡기게 되는 실정을 안타깝게 인식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민간조사업 법안을 만들어 공청회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하려고 하였으나 어려운 여러 가지 정치권의 상황으로 인하여 몇 차례의 기회를 놓치고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손상철, 2005 : 69~70).

2. 민간조사의 부정적 요인

심부름센터의 본래의 사업취지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수는 없지만, 현재 심부름센터에서 진행되고 홍보하는 업무의 내용을 살펴보면 업무 자체가 위법인 사안이 많을 뿐 아니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도 다양하고 많아서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며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심부름센터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유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에 악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기에 절대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손상철, 2005 : 88) 또한, 국가 기관과 상호 충돌의 발생가능성이 있다. 민간조사제도는 의뢰인의 의뢰를 받아 조사하는 제도로서 자칫 공적인 국가기관과 조사과정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민간조사제도 상호간의 경쟁에 의해 국가기관의 수사과정에 개입하여 국가기관의 수사를 곤란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제 등을 마련하여 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나영민·김원중, 2006 : 27). 민간조사가 제도화되면 긍정적인 부분이 크다고 할 수 있으나, 부정적인 요인도 생길 수 있다.

첫째 선진외국과 비교해 그동안 민간조사업업을 불법영업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역사적 왜곡현상으로 민간조사업업을 허용하면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이 오히려 커질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등 아직까지 홍신소, 불법심부름센터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회적 부정적인식이 강하다. 둘째, 신용정보이용법과 같이 민간조사업업을 불법화하고 있거나 민간조사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관계 법률이 적지 않으며 오랜 기간 민간조사업이 불법 영역화 되다 보니 기존의 경험 있는 민간조사와 관련한 종사자들을 확보할 수 없고 효과적으로 민간조사업 도입을 주장할 시민 사회적 역량이 부족하다. 셋째 심부름센터 등 기존 불법민간조사업체가 구성원 등의 교체 없이 계속해서 존속할 가능성이 적지 않고 우수한 민간조사인력을 양성할 교육기관과 민간조사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분쟁 조정경험 등의 부족으로 민간조사업업을 어떻게 적법화 하고 정착시킬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의 마련이 쉽지 않다(나영민, 2006 : 66).

이상에서 살펴본 민간조사업의 도입을 위한 노력과 부정적 요인을 고려하여 준비한다면 민간조사업의 도입전망은 밝을 것 있다. 그러나 정당한 민간조사업의 형태가 오랜 기간 불법화된 시대적 상황 과 최근 개인정보의 보호에만 치우친 나머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여 일정한 개인정보의 이용이 불가피한 민간조사업의 도입에도 적지 않은 걸림돌이 놓여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3. 도입방안

민간조사 분야의 국내외 현황과 실태에서 살펴본 것같이 민간조사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 및 정부의 관련 부서는 민간조사관련 제도를 준비함에 있어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 및 국내의 사회 환경과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여 민간조사업이 도입·정착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민간조사업의 도입에 필요한 전제조건과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1)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

(1) 의식의 전환

선진외국의 경우 민간조사제도는 공권력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분야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의해 발달해왔다. 특히 영미의 경우는 수백 년의 역사를 이어 왔고 국민들의 의식 속에 민간조사업업을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와 범죄조사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 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심부름센터의 부정적인 인식을 타파하고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호의적인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2) 관련 법률 제·개정

우리나라에서 민간조사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류의 제 정비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민간조사업무를 경비업의 하나로 추가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변호사법, 신용정보이용법, 정보공개법, 자격기본법 등에 민간조사제도의 관련 있는 사항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민간조사업과 관련한 통일적이고 명확한 근거로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나영민, 2006 : 67).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률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법률 제·개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3) 정부의 소관부처 명확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민간조사업법안을 보면 민간조사업자의 감독에 대하여 '이상배의원 안'은 경찰청으로, '최재천의원 안'은 법무장관으로 하고 있다. 또한 현행 법상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권과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청이 직접 민간조사업을 감독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우며 법체계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에는 2006년 6월 민간조사관련법안이 공포되었으면 경찰청을 소관부처로 하고 있다(손상철, 2007 : 68).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경비업의 주무관청인 경찰청을 소관부처로 하는 것이 수사·사법기관간의 업무 중첩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관리·감독에도 효과적일 것이다.

(4) 업무범위의 명확화

민간조사업무의 범위를 현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다(「민간조사업법안」, 제3조). 현대 법치주의사회에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에서 그 업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안에서는 '범죄 및 위법행위와 관련된 조사' 등에 대하여 그 업무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나치게 추상적인 자의적인 해석을 가져올 수 있다(이상원, 2007 : 30). 따라서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 중에서 단기적으로는 사적업무를 업무범위로 정하고 장기적으로 공적 업무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입법하는 것이 타당하다.(황정익, 2005 : 31). 위의 내용처럼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서 불법행위의 사전 방지와 관련 법률의 타 업무와의 마찰도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5) 법적 규제 및 피해 보상대책 강구

민간조사제도의 성공적인 시행과 민간조사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사회문제를 최소화하기위해선 법적으로 다양한 규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민간조사업 관련자에 대해 책임·의무 이행을 관련법을 통하여 요구하고, 미이행 시에는 징계·벌칙 등의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

일본은 민간조사업 자체가 불법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민간조사업무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일부는 우리나라의 소비자 고발센터와 비슷한 국가기관인 '국민생활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하거나 해결책을 찾기도 한다. 또한 미국 대부분의 주와 호주의 경우와 같이 민간조사업체의 등록 시 일정액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분쟁 발생 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강영숙, 2006 : 166~168).

국가 차원에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규제책을 통해 관리하므로 업체와 의뢰인 간에 불법행위의 거래를 사전에 제거 할 수 있어야한다. 또한 계약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구제는 국가기관의 특정 부서에서 담당하고 동시에 관련 민간단체를 설립하고 감시와 업무 협력을 하여 업체와 고객의 피해를 상호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2) 도입방안

(1) 국가자격제도 운영

자격이란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거나 일정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자격 기본법 제2조에서는 자격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 평가·인정된 지식·기술의 습득정도로써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자격제이란 인간의 능력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하기 위한 시스템을 의미하고, 자격증이란 이런 시스템을 통해 능력이 있다고 평가 또는 인정받은 사람에게 수여되는 증서라고 할 수 있다(유재두, 2007 : 213).

민간조사원의 자격제도를 논의 할 때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항은 첫째, 민간조사업의 시장은 얼마나 될 것인가를 예측해야 한다. 둘째, 민간조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이상원·이승철, 2007 : 18).

또한 민간조사원제도의 업무 범위에 따라 자격 요건도 다소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누구든지 쉽게 취득 할 수 있는 자격제도가 된다면 그에 적당한 대우 등에 관한 문제점과 실제 업무활동으로 인해 국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불러 올수 있기 때문에 민간조사원제도는 법무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등이 자격제도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자격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전대양, 2006 : 53).

위 내용에서 본 것처럼 여러 요인에 의해 변화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민간경비제도의 경비지도사 자격증과 같

은 시행착오를 겪지 말아야 할 것이다. 주무관청의 책임자와 민간단체의 전문가집단을 구성하여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후에 우리나라 실증에 맞는 수준의 자격증을 만들어야 차후에 발생될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처음 도입되는 것인 만큼 학계와 업계 등 관련 전문가집단의 의견과 일반시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2) 교육제도의 체계화

현재 신입 일반경비원, 경비지도사, 특수경비원의 기본 교육은 각각 28시간, 44시간, 88시간으로 규정되어있다(「경비업법시행규칙」, 제9조, 제12조, 제15조). 따라서 기본교육시간도 우리의 실정과 호주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최소 80시간 이상 최대 140시간의 교육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조사 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재개발과 교원확보가 우선되어야 하겠다(조용철, 2006 : 125).

이와 함께 제1차·제2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본교육과정을 마친 후 교육생의 10%를 3차 시험에서 탈락시켜 기본교육과정의 충실도를 향상시키고 일정수준 이상의 자질을 갖춘 전문 인력으로 양성시킬 필요가 있다.³⁾

한국의 다른 자격 교육현황을 살펴보면 손해사정사는 2차 시험합격 후 보험업시행규칙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한자에 한하여 손해사정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규칙 제6조, 7조). 법무사도 등록 전 연수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연수교육기간은 자격인정자에 대하여는 1주일 이상으로, 법 제4조의 시험합격자는 6주일이상으로 하고 있다(법무사법 시행규칙 제16조). 변리사는 등록 전에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하고(변리사법 제5조, 변리사시행규칙 제 7조), 감정평가사의 경우도 1년간의 수습기간이 있는데 6개월은 이론교육을 이수하고, 후반기 6개월은 실무연수를 받게 되어있다(이상원·감상균, 2006 : 66~67).

다른 자격증 교육 훈련의 형평성 및 자격증의 성격을 고려하여 교육시간, 내용,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을 엄격히 규정하여야 한다. 이처럼 교육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자격증의 발급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교육을 철저히 시킴으로서 업무수행 중에 위법 행위를 자행하지 않도록 교육에서 바로 잡아 주어야 할 것이다.

3) 최근 공무원시험의 면접에서는 필기 합격자의 약 10~25%정도를 걸러내는 추세이며, 공무원 교육기관의 입교 후 미 수료율도 2%대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신문 2006.11.2.

(3) 관련단체의 설립

① 민간조사협회의 설립

민간조사원은 그 자질향상 및 품위 유지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민간조사협회(이하“협회“라 한다)를 법인으로 구성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을 정하고 소관부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협회는 민간조사원 및 민간조사업자의 건전하고 적정하게 업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상황에 있어서 행동윤리의 기준을 장려하는 윤리규정을 제정하여 성실하게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민간조사원과 민간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한다(손상철, 2007 : 67).

② 대학 및 연구소의 설립

장기적으로 대학에 경호·경비학과와 추가개설과 민간조사관련 과목을 추가 전공하도록 하여 민간조사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우수교원의 공급배출을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에서 민간경비 관련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확인되고 있는 이때, 앞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우수한 민간경비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기 위해서는 대학 내에 민간조사 관련학과의 추가 개설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조용철, 2006 : 128). 이와 함께 민간조사관련 연구소 및 학회의 설립을 통하여 꾸준한 연구와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관련 내용 및 법령보완의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조사협회를 설립하여 민간조사업의 올바른 영업행위를 지향하도록 조업자의 역할과 국가, 의뢰인과의 중계인 역할을 하므로 민간조사업의 불법영업을 줄이고 부정적인 인식의 전환의 계기가 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전문교육기관과 연구소의 설립으로 제대로 교육받은 전문가의 배출과 민간조사의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이것은 민간조사원의 사회적 입지 도를 높이고 국민에게는 질 높은 서비스와 믿을 수 있는 민간조사제도로 자리 잡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4) 사후관리 철저

① 교육기관의 정립 및 재교육 강화

민간조사원의 경우 전문성과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신규교육과 재교육은 어떤 다른 직업교육보다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은 위임입법에 의해 그 교육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 등에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체계적인 정착과 안전한 실시를 위하여는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공인된 교육 즉 대학기관에 의해 전문

교육을 담당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교육기관의 정립은 제도의 도입을 위한 필요전제조건이 되어야 하며, 체계화된 교육과 교육기관은 우리 현행 법안의 민간조사제도를 우리사회에 정착시키는 밑거름이 된다.

민간조사제도에서 그 구성원에 대한 재교육은 기본에 충실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국민의 의뢰에 의해 조사하는 분야로서 의뢰인보다 더 높은 전문지식과 소양이 필요하므로 재교육이야말로 민간조사제도를 반석위에 올릴 수 있는 제도이다. 재교육에 대한 교육기관은 전문 대학교육기관 등에서 담당하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교육하여야 한다(나영민 · 김원중, 2006 : 28~32).

아무리 우수한 인력이라 고해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지 않으면 그 기능은 저하될 것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제시한 것 같이 주무관청에서 선정한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과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법적으로 그 방법과 시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교육의 부실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관할 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와 꾸준한 관심이 선행되어야 올바른 교육이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

첫째, 우수교원 및 교재의개발이 필요하다. 현재우리나라의 민간조사업종은 그 조사기법이나 법률적 토대 면에서 제대로 된 검증과정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학교수 및 박사급의 우수교원을 확보하여 이들로 하여금 우수교재를 개발하고 교육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전문가집단 팀의 구성이 시급하다. 둘째, 교육실습시설의 확충을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민간조사원을 전문적으로 교육훈련 시킬 수 있는 전문교육시설이 부재한 상태이다. 일찍부터 민간조사제도가 발달해온 미국·영국·호주 등의 영미법계 국가는 물론이고 일본의 경우도 일본조사협회 산하 전문교육기관이 지정되어 민간조사 인력이 전문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 비추어볼 때, 전국대학 내에 과학수사론 및 민간조사실무과목을 강의 할 수 있는 실험실 및 강의 교원이 확보된 교육기관을 경찰청 위탁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조용철, 2006 : 126~127). 셋째, 우수인력 확보방안을 개발하는 것이다. 전문 인력의 민간조사서비스에 투입함에 따라 의뢰자는 더욱 높은 질의 민간조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높은 질에 대한 소비자의 고비용 지불의사가 다시 직접적으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와 근무환경 개선정책으로 재투자될 수 있을 것이다(Arthur J. Bilek, 1977 : 13). 따라서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기준 강화와 함께 근무환경, 보수체계 등 이들 전문 인력에 대한 다양한 유인책을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③ 산·학·정 협력체제 구축

현재 민간조사와 관련된 법·제도의 정비는 사실상 민간경비업계나 관련 민간경비학계의 중추적인 활동보다는 정치권과 경찰 등 관계당국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의 기본권 침해의 우려와 그동안 심부름센터를 통한 불법서비스의 만연으로 인한 민간경비업계에 대한 불신에 기초하여 현재의 법·제도의 정비과정에는 핵심적인 역할이 부족했지만, 앞으로 관련 법령과 제도의 중심에서 규정의 장단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공동의 토론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산·학·정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협의 기구를 조직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법률의 정비와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조용철, 2006 : 127).

V. 결 론

21세기 사회는 모든 영역과 기능에서 빠른 변화가 진행되면서 국민의 정치·경제·사회적 여러 분야에서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전문화 시키고 있다. 민간경비 산업의 영역확대와 시큐리티 환경의 변화는 국민으로 하여금 기존의 민간경비 서비스의 수요증가 뿐 아니라 새로운 분야의 서비스를 기대 하게 되었다. 국민수요에 의해 새로운 서비스로 급성장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민간조사업이라 할 수 있다.

민간조사제도는 공권력이 담당할 수 없는 경미한 분야에서부터 정부가 개입하기 곤란한 분야까지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개입이 가능하다. 국가는 국민의 요구 증가에 의한 민간조사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민간조사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우리나라도 시대적 필요성에 의해 1999년부터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위한 입법화를 추진해 왔지만 많은 걸림돌이 발생하였다. 제도의 정착과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산재해 있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현 실정에 맞추어 충분히 흡수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제도의 미비로 인한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의 확대 방지, 공권력의 한계 보완, 치안환경의 변화에 대응, 변화하는 국제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의 향상 등의 사회적 필요성을 인식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민간조사제도를 채택하기 위한 연구 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입방안 제시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전제조건으로는 국민과 정부의 민간조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의 전환,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한 정부의 소관부처 명확화 및 업무범위의 명확화, 법적 규제 및 피해 보상

대책 강구 등과 같이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한다. 전제조건을 바탕으로 도입 방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자격제도의 운영으로 자격기준과 자격시험에 대한 명확한 근거제시와 자격증의 신뢰성 및 가치성을 높여야한다. 둘째, 교육제도의 체계화를 통한 민간조사원의 교육과정을 철저하게 관리 하여야한다. 전문 인력의 배출과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하므로 불법행위의 발생을 사전 예방할 수 있다. 셋째, 관련단체의 설립을 통한 업체의 자발적 관리 및 민간조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꾸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 넷째, 사후관리의 중요성이다. 사후관리를 위한 교육기관의 정립을 통해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하고 재교육의 기회를 강화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또한 산·학·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상호 협조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민간조사업의 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순기능이 역기능보다 많을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공권력의 한계 보완, 국민의 치안환경 개선, 새로운 직업으로서의 정착에 따른 경제발전에 기여될 것이다. 따라서 민간조사제도의 입법화와 관련 법률의 제정비는 신속히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나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의 해결을 위해 사회의 각계 전문가와 정부의 책임자,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제도화 시켜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강효훈(2000). 「탐정은 벤처보다 낫다」. 서울 : 동아일보사.
2. 박병식(1996). 「민간경비론」, 서울: 법률출판사.
3. 손상철(2005). 「민간조사학 개론」, 서울 : 백산출판사.
4. 이동영(1999). 「21세기 공인 탐정이 뜬다」, 서울 : 굿인포메이션.
5. 김태환·강영숙(2004). 「프로탐정의 테크닉」, 서울: 백산출판사.
6. 강영숙(2006). “한국의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경호학박사 학위 논문.
7. 김원태(2006). “민간조사원의 권한 남용방지대책에 관한 고찰“, 대한민간조사학회 학술세미나, 대한민간조사학회.
8. 나영민(2006). “민간조사업의 도입전망과 대응“, 제16회한국경호경비 학술세미나 자료집, 한국경호경비학회.
9. 나영민·김원중(2006). “민간조사제도의 정착 및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제16회 한국경호경비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한국경호경비학회.
10. 노호래(2007). “민간경비제도 한·영 비교분석“, 2007년 한국민간경비학회 춘계 학술세미나 자료집, 한국민간경비학회.
11. 박준석(2006). “한국 민간보안·시큐리티 산업의 발전방안“, 「용인대학교 논문집」.
12. 손상철(2007). “민간조사제도의 규제방안과 소관부처에 관한 고찰“, 바람직한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경찰청 수사국.
13. 이기호·박병식(2007). “일본탐정업법의 제정과 주요내용“, 2007년 한국민간경비학회 춘계학술세미나 자료집, 한국민간경비학회.
14. 이동영(2001). “공인탐정제도의 필요성“, 「수사연구」, 수사연구사.
15. 이상원·김상균(2006). “공인탐정 교육훈련모형에 관한 연구“, 제8회 춘계학술세미나집, 한국민간경비학회.
16. 이상원·이승철(2007). “민간조사업 법안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9호, 한국민간경비학회.
17. 이상원(2007). “민간조사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2007년도 한국민간특수행정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한국민간특수행정학회.
18. 이현희(2006). “한국 시큐리티환경변화와 국내 산업전망“, 한국경호경비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학술세미나집, 한국경호경비학회.
19. 유재두(2007). “민간조사원 자격요건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9호, 한국민간경비학회.

20. 장석현(2007). “미국경찰서비스의 민영화에 대한 평가“, 제10회 한국민간경비학회 춘계학술세미나집, 한국민간경비학회.
21. 전대양(2006). “민간조사법안의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8호, 한국민간경비학회.
22. 조용철(2006). “공인탐정 인력의 전문화방안에 관한 연구“, 제9회 한국민간경비학회 정기학술 세미나자료집, 한국민간경비학회.
23. 황정익(2005). “공인조사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치안정책연구소.
24. 경비업법.
25. 공인탐정입법안(1999년 하순봉 의원 입법안).
26. 민간조사업 입법안(2005년 이상배, 최재천 의원 입법안).
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8. 서울신문 2006.11.2.
29. 뉴스메이커 719호, 2007. 4.10.
30. Arthur J. Bilek(1977). Private Security, Cincinnati: Anderson Pub.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Act 2001'.
31. <http://www.bls.gov/home.htm>.
32. <http://www.homeoffice.gov.uk>.
33. <http://www.ncpa.org>.
34. <http://www.ncpa.org/pi/crime/pdcrm/pdcrm63a.html>.
35. <http://www.pali.org/papdact.htm>.

논문접수일 : 2007년 10월 5일

심사의뢰일 : 2007년 10월 10일

심사완료일 : 2007년 11월 10일